

정책 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ACA, IGT-RA, JFA-RA, JHF-RA
책임 맡은 사무실: 수석 학업 책임관(Chief Academic Officer)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 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A. 목적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는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가 안전한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은 언어 행위, 신체적 행위, 서면으로의 행위(텍스트/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기기 사용 포함)를 말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모든 활동에서 개인적 언어, 신체 또는 서면으로의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을 금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더 나아가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협박 행위에 관한 피해자, 증인, 방관자,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의 보복과 앙갚음을 금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B. 이슈

1. 희롱과 협박을 신고한 신고인 대상의 보복과 앙갚음을 방지하고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의 예방은 학생, 행정직원과 교직원과 더불어 예방 및 대처에 관한 교육구 전체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인 학생은 건강, 안전, 그리고 교육적 효과에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2. 이 정책의 목적과 Maryland 법에 따라 다음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 a) “**왕따, 희롱, 협박**”이란, 언어, 신체, 서면,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고의적인 접촉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혜택이나 기회 및 수업 이행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1)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에서 명시된 실제 또는 예상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행해지거나
 - (a) 학생의 개인적 신체부위 노출하고 학생의 묘사 또는 설명이 포함되거나 성적 접촉 관련 행위 중을 포함한 성에 관련된 경우.
 - (b) 협박 또는 심각하게 겁을 주는 행위. 그리고
- (2) 다음 중-
 - (a) 학교 공공건물, 학교 활동, 학교 통학버스에서 일어났을 경우. 또는
 - (b) 학교운영에 심각하게 혼란을 줄 경우.
- b) *사이버 불링*은 왕따, 희롱, 협박의 한 방법입니다. “사이버 불링”이란 소셜미디어 사용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불링에는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 c)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란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 d) *개인적인 부위(Intimate parts)*란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기노출, 음부, 엉덩이 여성 유두를 의미합니다.
- e) *성적 접촉(Sexual contact)*이란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42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식기와 생식기, 구두/입과 생식기, 항문과 생식기, 구두/입과 항문을 포함한 같은 또는 다른 성의 사람들 간의 성적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은 신체적(때리기, 밀기, 밀치기), 언어적(놀리기, 협박하기, 강압하기, 놀림거리로 만들기, 경멸적인 이름으로 부르기) 또는 관계적인 것(소문 퍼트리기, 왕따 또는 소외하기, 외면하기)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C. 입장 표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를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며 대처방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인계합니다. 학교에서의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를 금지하고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과 협박을 신고한 사람에의 보복과 양갈음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구 전체의 예방과 대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예방과 대처

- a)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의 유행과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이해와 각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에 따른 방법과 선후책,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 예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담당과 교직원을 위한 연례 전문성 개발. 전문성 개발에는 또한,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와 방관자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 b) 또래의 서포트, 상호존중,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과 학생이 성인에게 불링을 알리도록 장려하는 문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 예방에 대한 학생 참여.
- c)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의 유행과 원인 및 결과에 관해서와 학생을 돕기 위한 방법에 관해 학부모/후견인에게 알리도록 학생 가족과 커뮤니티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 d)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는 공공보건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 방관자인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건강과 정신 건강 자원과 협력.
- e) 불링 피해자인 학생의 안전을 확실히하며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 예방의 대처 범위를 개발.

2. 결과와 개선 행동

괴롭힘/왕따/불링을 행한 학생, 보복행위와 앙갚음에 관련된 학생들, 왕따에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전한 학생의 처분과 교정행동은 일관되고 공정하게 MCPS Regulation JFA-RA,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 신고 절차

- a) 교육구 전체는 학교에 간편하고 안전하며 나이에 적절한 비공개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 신고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 b) 학생, 교직원, 학부모/후견인에게 *MCPS 230-35, 희롱 및 협박 행위/왕따 양식(Bullying, Harassment or Intimidation Reporting Form)*의 필요여부를 포함한 보고절차를 각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c) MCPS 는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행위의 보고를 전폭적으로 장려하고 지지합니다. MCPS 는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 방관자인 학생 모두를 돕기 위해 신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4.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행위신고 절차

- a)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모든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 신고를 자세히 조사하고 모든 대상자의 현재의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포함한 적절하고 신뢰할 만하며 공정한 조사를 즉시 실시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 학교장 또는 대리인은 구제조치 적용과 적절한 조치, 개선 및 교정을 위한 측정과 적절한 경우 행동에 따른 결과 적용,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또는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및 기타 학생이 차별적 영향이나 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적용합니다.
- b) 학교 행정담당은 괴롭히기/왕따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 c) 조사를 마치고 결론을 지은 후에도, 계속될 경우, 교직원은 괴롭히기/왕따를 당하거나 제공한 학생 양쪽과 별도로 또한 비밀을 유지한 회의를 합니다.

5. 괴롭히기/왕따를 당한 학생과 제공한 학생 그리고 방관한 학생들을 위한 도움 프로그램

만약 학생이 약자 괴롭히기/왕따, 희롱 및 협박에 관한 상담을 원할 경우, 교직원은 실질적이며 안전하고 나이에 적합한 개별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의 피해자, 가해자와 방관자를 돕는 서비스 리스트를 학생과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D. 바라는 결과

학교는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이 없는 교육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움과 처벌등의 예방과 대처 방법을 제공합니다.

E. 전략의 시행

1. 교육감은 MCPS 에서 조사절차와 신고절차를 숙지하는 Maryland 주 Department Education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신고와 조사 절차, 학부모/후견인 또는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의 알리는 절차, 왕따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에게 제공되는 도움, 처벌과 교정행위, 이 절차를 공표하는 절차, 사건발생 데이터 모니터링을 포함한 이 정책을 적용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2. 교육감은 이 정책을 적용하고 학교에서의 약자 괴롭히기/왕따/불링, 희롱 및 협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3. 교육위원회가 수용한 정책 적용을 위한 모든 정책은 정보항목으로 교육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F.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위원회의 정책평가 절차에 따라 검열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7-303.1, §7-424, §7424.1*

정책사: 2010년 3월 9일 Resolution No. 132-10 에 따라 새 정책 적용; 2016년 11월 15일 Resolution No. 489-16 에 따라 수정; 2017년 6월 26일 Resolution No. 319-96 에 따라 기술적 수정; 2018년 6월 25일 Resolution No. 351-18 에 따라 기술적 수정